목 차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여도서관 운영규정

2023. 11.

제1장 총 칙	1
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	2
제3장 자료관리 및 이용	4
제4장 순회문고	 6
제5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	7
제6장 학습동아리	8

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운영규정

[시행 1971. 10. 15.] [2020. 5. 11. 전부개정] [2023. 11. 21. 일부개정]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및「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,「충청남도교육·학예에 관한 공공도서 관 운영규칙」에 의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(이하 '도서관'이라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- 제2조(운영시간) ①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'교육장'이라 한다)이 정한다. ②개관 및 운영시간은 (별지 1호)과 같으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3조(휴관 혹은 휴실) ①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(국경일, 경축일, 임시공휴일 등)
- 2 기타 재난 등에 의한 임시휴관일
- ②실별 휴실은 도서관 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시설 및 장소를 일정기간 휴실할 수 있다. ③기타 재난이 아닌 임시휴관일, 제2항에 의해 휴실하는 경우 7일 전에 공고한다.
- 제4조(시설사용) 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 및 방법, 사용료 등은 '충청남도 교육청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'에 의한다.
- **제5조(업무)**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다.
- 1.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, 정리, 보존
- 2. 지역주민과 학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3.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4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
- 5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실시
- 6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
- 7. 그 밖의 도서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제6조(변상) ①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, 파기,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본인은 이를 동일 혹은 유사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 ②변상액은 현물의 현 시세에 준하여 정한다.
- 제7조(이용 및 출입에 대한 제한) 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혹은 출입을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도서관 시설 및 비품 등을 오·훼손, 파손, 절도하는 등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2. 자료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자료관리 및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3. 폭력, 협박, 고성, 폭언, 성희롱, 소음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불편함, 협 오감,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
- 4. 도박, 게임, 음란물 열람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행위
- 5. 이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- 제8조(재정)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.
- 제9조(자료관리프로그램) 자료 관리에 따른 전반업무는 K-LA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.

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

- 제10조(설치)「도서관법」및「충청남도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조례」에 의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부여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제11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 한다.
 - 1.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(별지 2호)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- 1.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
- 2. 교육, 문화 분야 인사
- 3. 도서관 이용자(강사, 학습자 등)
- 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위원의 사임,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4조(위원의 배제)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위원 회의 안건 심의·의결에서 배제한다.
- 1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안건
- 2. 위원이 속한 기관 · 법인 ·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
- 3.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
-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며 관장은 위원이 위의 1~3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6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, 임시회로 구분한다. ②정기회는 년 2회로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장이 소집한다.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.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 야 한다.
- 제18조(위원의 위촉 해지)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 - 2. 질병·전출·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결의한 경우

- 제1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자료관리 및 이용

제21조(장서관리) 자료의 효율적 구성 및 확보를 위하여 매년 장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서를 관리한다.

제22조(범위) 자료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료의 선정, 주문, 검수, 등록에 관한 사항
- 2. 자료의 제본 및 수리에 관한 사항
- 3. 자료의 기증, 기탁, 교환, 나눔에 관한 사항
- 4. 제적에 관한 사항
- 5. 장서의 통계에 관한 사항
- 6. 자료의 복본조사
- 7. 자료의 장비작업
- 8. 기타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관리

제23조(자료의 수집 및 선정) ①자료의 수집 및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- 1. 국내에서 출판되는 학술. 교양. 학습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이 인정되는 자료
- 2. 부여지역의 간행물 및 향토자료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자료
- 3. 유익하고 대중성 있는 자료 중 최신성 있는 자료
- 4. 선정적이거나 질이 낮은 자료는 배제
- 5. 장서구성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문학류(800)는 전체의 65% 이하로 선정
- 6. 1종당 복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권 이내로 제한
- 7. 기타 다양한 분야의 양서
- ② 위의 ①항에 의해 선정된 자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. 단, 희망도 서, 최신도서에 대하여 등 구입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24조(기중) ①기증자료는 기증접수대장(별지 3호)에 기록 후 제23조①항의 기준에 준하여 등록 여부를 정한다. ②등록하지 않는 도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나눔 등에 활용한다.

- 제25조(연속간행물) ①연속간행물은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심의·선정하되 당해 회계 연도에 변동, 추가선정 할 수 있다. ②보관기관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는 필수 보관 기관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폐기 혹은 필요한 단체. 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.
- **제26조(자료의 구입)** 자료의 구입은 매년 수립하는 장서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구입과 수시구입을 실시한다.
- 제27조(자료의 등록) ①자료는 수입순에 따라 1책 1번호를 부여하며 자료배치에 따라 관리구분을 부여한다. ②자료의 분류는 KDC 6판을 사용한다.
- 제28조(자료의 이용) ①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이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②회원가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남도교육 첫통합도서관 서비스규정」에 의한다.
- 제29조(자료의 반납) ①자료이용자는 자료의 반납일을 준수해야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. ②반납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반납 안내 및 독촉통지서를 발송한다.
- 제30조(자료의 복사 및 제한)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열람이 금지된 특수자료
 - 2.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정도의 복사 (저작권법 등의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한 이용자에게 있음)
 - 3. 기타 도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제31조(장서점검 및 제적) ①장서점검은 2~3년에 한 번 실시한다. ②자료의 제적기준 과 범위는 「도서관법」의 기준에 의한다.
- 제32조(제적대상)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.
- 1. 자료의 오손 및 파손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한 자료
- 2. 자료의 이용가치가 낮아져 영구보존 할 가치가 없게 된 자료
- 3. 최신성을 요하는 자료 중 10년 이상 된 자료
- 4. 미반납자료 중 2년 이상 대출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회수가 불가한 자료

제33조(자료의 폐기) 제적처리 된 자료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기관· 단체 등에 기증 혹은 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」에 의거 매각처리 한다.

제4장 순회문고

제34조(설치) 지역 내의 시설·단체 중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정· 설치한다.

제35조(절차) 순회문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설치한다.

- 1. 순회문고의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의 장은 순회문고 설치신청서(별지 4호)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 지정 여부를 검토 후 순회문고 지정서(별지 5호)를 교부하다.
- 제36조(자료대출) ①대출자료의 선정은 순회문고 지정 단체의 관계자가 한다. 다만, 대출자료의 추천을 요구할 시 도서관 담당자가 대출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. ②대출 권수와 기한은 기관에 따라 최대 30일간 50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할 수 있다. ③자료 대출시 순회문고 자료대출인계서(별지 6호) 및 대출목록을 각 1부씩 보관한다.
 - ④ 도서의 대출 및 반납, 선정 절차는 별도의 순회무고 우영계획에 의하다.
 - ⑤ 대출자료는 자료대출 인계서 및 대출자료 목록에 근거하여 일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7조(설치 철회)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회문고의 설치를 철회할 수 있다
- 1. 순회문고로 대출된 자료를 독서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2. 순회문고 지정 단체장의 철회신청이 있을 때
- 3.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4. 장기간(1년 이상) 대출실적의 부실로 지정 단체장의 설치 철회 동의를 얻은 경우

제5장 독서진향 및 평생교육

제38조(역할)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한다.

제39조(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) ①프로그램은 공개 모집된 강좌에 대하여 프로그램 심의 배점표(별지 7호)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②강사는 위 ①호에 의해 선정된 강좌를 제안한 강사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되 강의 의사가 없는 경우 별도로 정한다. ③강좌의 심의는 관장, 업무담당자, 기타 관계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모집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1. 12회 미만의 단기강좌 (예, 방학특강, 작가초청, 학부모 강좌 등)
- 2.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강좌 (예, 학력인정과정, 자격증과정 등)
- 3. 연중 강좌 중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강사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강좌의 강사
- 4. 자원봉사 활동 등의 별도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경우

제40조(강좌 제안) 프로그램의 제안은 강사 혹은 학습자 등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프로그램 제안서(별지 8호) 일반인용
- 2. 강의계획서(별지 9호) 강사용
- 3. 강의 이력서(별지 10호) 강사용
- 4.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강사용
- 5. 기타 관련 서류 (자격증, 강의경력증명서 등) 강사용

제41조(강사 관리) ①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는 강의 종료 후 강사대장(별지 11호)에 등재한다. ②강사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강사수준,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.

제42조(강사의 의무) ①강사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지도하고 학습자 출석을 관리 한다. ②강사는 학습자로부터 금전 수수를 하거나 교재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매매,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 강의계획서 등의 사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③강의 시간 및 요일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결강 처리할 수 있다. ④기타 정치적, 종교적 발언 등의 학습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로 학습자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.

제43조(개강) 모집정원 중 접수인원이 50% 이상인 경우에 개강한다. 다만, 학습자의 요구 혹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0% 미만인 경우에도 개강할 수 있다.

제44조(학습자 부담) ①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충청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. ②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재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5조(강사비) 강사비는 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」에 준한다.

제6장 학습동아리

제46조(신청요건) ①독서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은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자발적인 학습 또는 독서활동에 참여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
- 2. 활동에 필요한 연간 계획 수립 및 월 1회 이상의 정기모임 실시
- ②학습동아리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학습동아리 승인신청서(별지 12호)
- 2.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(별지 13호)
- 3. 학습동아리 회원명단(별지 14호)

제47조(숭인 및 취소) ①제46조의 ①항의 요건을 갖추고 ②항의 관련 서식을 제출한 동아리에 한해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.

- 1. 동아리의 운영 목적 이외의 종교적, 정치적,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
- 2.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- 3. 기타 지역사회 및 도서관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회계 연도에 준하며 매년 승인된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대장 (별지 15호)에 관리한다.
- 제48조(지원 및 관리) ①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는 자체 부담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. ②도서관은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일지(별지 16호)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례, 법규 혹은 통상 예로 준하여 결정한다.
- 2. 이 규정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11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5.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6. 이 규정은 2016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7. 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.
- 8.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9.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별지 서식 목차

[별지	제1호] 운영시간 및 휴관일	11
[별지	제2호] 위촉장	12
[별지	제3호] 기증 접수대장	13
[별지	제4호] 순회문고 설치신청서	14
[별지	제5호] 순회문고 지정서	15
[별지	제6호] 자료대출 인계서	16
[별지	제7호] 프로그램 심의 배점표	17
[별지	제8호] 프로그램 제안서	18
[별지	제9호] 강의계획서	19
[별지	제10호] 강의 이력서	20
[별지	제11호] 강사대장	21
[별지	제12호] 동아리활동 승인신청서	22
[별지	제13호] 동아리 활동계획서	23
[별지	제14호] 동아리 회원명단	24
[별지	제15호] 동아리 등록대장	25
[별지	제16호] 동아리 활동일지	26

[별지 제1호] 운영시간 및 휴관일

구 분	운영 시간	휴관일	비고
종합자료실	월~금 09:00 ~ 19:00 토 09:00 ~ 17:00	그리키 기위 고중이	
자율학습실	월~금 09:00 - 21:00 토 09:00 - 18:00		

[별지 제2호] 위촉장

위 촉 장

소속: 성명:

귀하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여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20 . . ~ 20 . . .)

20 년 월 일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 여 도 서 관 장

[별지 제4호] 순회문고 설치신청서

기증 접수 대장

년

접수 번호	접수일	기 증 자 (성명/단체명)	도 서 명	기증권수	비고
소 계	기 중 저		누 계	기 중 자 : 기중권수 :	명, 권

순회문고 설치 신청서

기 관 명			기관인원	
기관주소	(≊)		
전화번호			FAX	
기관장	성명		전화번호	
업무담당자	성명		전화번호	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부여도서관 운영규정 제34조~37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와 같이 순회문고를 신청합니다.

- 1. 기관 또는 단체는 순회문고 설치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한다.
- 2. 대출받은 도서를 망실,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하거나 도서의 정가 금액으로 변상한다.

년 월 일

기관명 ○ ○ ○ (서명/직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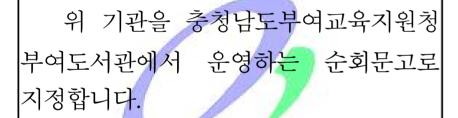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장 귀하

[별지 제6호] 자료대출 인계서

순회문고지정서

기관명:

소재지:



20 .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 관장

자료대출 인계서

1. 기 관 명 :

2. 대출일: 20 . . .

3. 반납예정일 : 20 . . .

4. 대출권수 : 총 권

5. 대출자: (사인)

* 첨부 : 대출목록(전산출력) 1부.
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장

프로그램 심의 배점표

明	점항목	明:	점	세부항목	배점 기준	비고			
	운영목적 및			A 매우 높음 B 높음	30~28 27~25	예1) 아동-학력증진, 창의성 및 인성함양 등			
	전책 적합성	30	0	C 보통	24~22	예2) 일반-자기계발, 자녀			
	,,,,			D 낮음	21~19	교육, 건전한 여가선용 등			
	강의계획서			A 매우 높음	20~19				
	의	20	0	B 높음	18~17				
	충실도			C 보통	16~15				
정성				D 낮음	14~13				
평가				A 매우 높음	10~9				
	강좌의 참신성			B 높음	8~7				
				C 보통	6~5				
				D 낮음	4~3				
		20		A 매우 높음 20					
	학습자 선호도			B 높음	18~17	단, 신규강좌의 경우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			
				C 보통 16~] 정의계획시를 참고이역 평가함			
				D 낮음	14~13				
							A. 해당분야 학사이상 혹은 (국가, 민간)자격증 1급	17	
정량	강사의		17	B. 해당 전문기관 수료 혹은(국가, 민간)자격증 2급	15				
평가	전문성	20		C.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	13				
			3	★ 부가점: 해당분야 지도경력 최근 3년 이내 6건 이상	2				
				★ 부가점: 해당분야 봉사활동 경력 2년 이상	1				
		é	총	점	100				

※ 동점자인 경우 재능기부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

[별지 제8호] 프로그램 제안서

프로그램 제안서

□ 프로그램 제안자 인적사항

성 명	구	분	학습자
주 소			
전화번호	휴대	전 화	
e-mail	직	업	

□ 프로그램 제안 내용

프로그램명		
교육대상	ex) 유아(5세~6세, 7세), 학생(초1~6학년), 학부모, 가족, 성인 또는 노인(65세 이상)	명
프로그램 개요	● 주당 00시간, 총 00회 수업● 프로그램 목표 또는 목적● 프로그램 내용 간략히 설명	
기타사항		

- 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제안자 신분 확인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신청서에 명기된 항목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해당문서 보관기간까지(수집 목적의 달성 및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.) 부여도서관 프로그램 제안에 필요한 <u>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</u>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 □ 동의하지 않음 (미동의시 강사 계약 및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
	년	월	일
제 안 자	(서명	또는	인)

()년 (상/하)반기 강의계획서

강 조	타 명			강 사 명				
대	상	ex) 초등 3 최대 (희망 시간	1순위 화요일(10:00~12:00) 2순위 목요일(14:00~16:00)			
강좌	소개							
교육	목표							
	, L 4U	교 재	주교재명 :			원)		
수 경 준비	5 생 사항	재료비	총액 :	원 / 호	회당 :	원		
		기타사항(준비물)						
			교 육 :	개 요				
회차		ટ	}의 내용		교수방법	준비물 및 활용기자재		
1		※ 공고된 수	업 회차에 맞게 직	박성	ex) PPT, 강의, 토론 등	ex)빔프로젝트 엠프 등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
※ 자격증 대비 프로그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표시의무에 해당하는 사항(자격의 종류, 등록 또는 공인 번호, 해당 자격을 관리·운영하는 자, 자격취득 및 자격 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,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)을 반드시 제출

[별지 제10호] 강의 이력서

					0	력		서
사 진		<u>:1</u>		(한글)			휴대전화	
			성 명	(한문)			자택전화	
			생년월일	0	000년 00월 0	0일	E-mail	
주		소						
년	월	일		<u> </u>	부 력 사	항		경력확인기관
					관 련 자	격 증		
			,		경 력 /	사 항		
					저 술 및	연 구		

부여도서관 강사대장

계약	강사	프로그램명	생년	주	전화	최종			고용사항		결 재		
일자	명	/강의기관	월일	소	번호	학교	기간	횟수	시간/요일	근거	담당	관장	

[별지 제12호] 동아리 승인신청서

년도 동아리 활동 승인신청서

동아리명					회원	[인원				명	
활	·동기간	월 ~ 월	요일	및 시	간	<u>.</u>	일(:	~	:)
지도강사 (해당 시)					HР						
	성 명										
	주 소										
동아리	전 화				HР						
대표	직 업			E	-mai	1				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	※ 보유 및 이용※ 보유항목: 성[™]□ 동의합니다.	명, 주:	소, 전]화번	호, 후	후대전]화t]호,	이메	일
위와 같이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동아리활동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
첨부: 1. 동아리활동 계획서 1부 2. 동아리회원 명단 1부.											
		년	월	일							
대표자: (사인)											
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장 귀하											

년도 동아리 활동계획서

■ 동아리명	대표자
■ 목 적(취지)	1. 2.
■ 활동계획	1. 활동주제: 2. 활동시간: 요일(: ~ :) 3. 활동계획 4. 봉사활동 계획(해당 시)
■ 전년도 실적 (해당 시)	1. 운영기간: 월 일 ~ 월 일(총 회) 2. 운영시간: 매주 요일(: ~ :) 3. 활동내용: 4. 봉사활동 실적:

[별지 제14호] 동아리 회원명단

년도 동아리 회원 명단

순	구분	성명	주 소	전화번호	핸드폰
1	회장				
2	총무				
3	회원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
부여도서관 동아리 등록 대장

순	동아리명	대표자명	활동기간 및 시간	활동장소	허가일	해지일	해지사유	결재	
正	<u> चलाव</u>	(연락처)	철당기산 옷 시산	有2.9 元	이기원	에 시 큰		계	관장

[별지 제16호] 동아리 활동일지

년 월 동아리 활동 일지

동아리명	확 인	(서명)
활동 참가자		
활동일시	활동장소	
학습 내용 및 토론		